## [별표 2]

## **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**(제14조 관련)

구분	반 환 사 유	반 환 금 액
공통	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	사용(수강)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
	제1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사용료 · 수강료 전액
사	제14조 제3호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	사용료 전액
용 료	제14조 제3호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	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%를 각각 공제한 금액
수 가	제14조 제3호 중 수강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	수강료 전액
장 료	제14조 제3호 중 수강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	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